

정 관

(2023. 03. 29 개정)

HYUNDAI
corporation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상 호)

본 회사는 "현대코퍼레이션 주식회사"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"HYUNDAI CORPORATION"이라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사업)

- 1)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
- 2) 선박설계, 건조, 판매와 수리판매 및 동 대행업
- 3) 선박부품과 철구제품 판매 및 동 대행업
- 4) 각종 기계와 부속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5)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
- 6) 건축자재, 화학제품, 요업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7) 운반용 기계와 부속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8) 의약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
- 9) 식물, 편물, 봉제품 모피혁제품의 원료와 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10) 해운, 운송, 하역, 창고업 및 동 대행업
- 11) 부동산 개발, 판매, 임대 및 부동산 간접투자업(REITs)
- 12) 전기 전자 제품 제조판매 및 동 대행업
- 13) (삭제)
- 14) 군납업 및 내국 수출입업
- 15) 약기제품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16) 목재 및 목가공품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17) 광산업, 광산물의 판매 및 동 대행업
- 18) 해외공사 수주업
- 19) 요트, 운동구류, 각종잡화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20)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
- 21) 철강제품의 제조 판매, 임대, 가공 및 동 대행업

- 22) 타이어 제조판매 및 동 대행업
- 23) 산업설비 판매 및 동 대행업
- 24) 자원개발 및 동 판매업
- 25) 원유,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
- 26) 해양설비 및 동 구조물의 제조 판매 및 동 대행업
- 27) 주화·지폐 및 이에 준하는 인쇄물 등의 해외수주 납품 및 동 대행업
- 28) 해면·기타어업, 양식업, 수산물 처리가공업
- 29) 광학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
- 30) 공업단지 개발, 분양 및 동 대행업
- 31) 펄프, 제지산업 제품의 제조, 수입판매 및 동 대행업
- 32) 비료, 시멘트 제품의 판매 및 동 대행업
- 33)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, 판매 및 동 대행업
- 34) 비철금속 제련 및 동 판매업
- 35) 부동산 분양 공급업
- 36) 영화, 방송 및 기타 공연관련 산업
- 37) 오락관련 산업
- 38) 광고업, 옥외광고업 및 동 대행업
- 39) 음식점업
- 40) 부가 통신업 및 동 대행업
- 41)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
- 42) 첨단 위락시설 운영업
- 43) (삭제)
- 44) 운동설비 운영업 및 동 대행업
- 45) 사업, 경영 자문(Consulting), 기업 인수·합병 주선 및 기업 구조조정업
- 46)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
- 47) 일반 종합 및 전문 소매업
- 48)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
- 49) 상가 분양업

- 50) 주택 신축 판매업
- 51) 영화상영, 수입, 제작, 배급업 및 동 대행업
- 52) 스포츠, 문화예술사업 및 동 대행업
- 53) 전자상거래업
- 54) 인터넷사업
- 55)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콘텐츠 제작, 판매 및 동 대행업
- 56) 이동통신상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, 판매 및 동 대행업
- 57) 모바일 사업(개인용 휴대용 단말기, 이동통신 단말기(휴대폰)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 사업)
- 58) 이동통신 단말기와 무선통신 네트워크 활용한 무선 인터넷 사업
- 59) 코드체계와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운영사업
- 60) 블루투스(Bluetooth) 사업
- 61) 건강용품 제조, 판매 및 동 대행업
- 62) 화장품 제조, 판매 및 동 대행업
- 63) 프랜차이즈 사업
- 64) 주류 제조 판매업
- 65) 미용, 욕탕, 유사 서비스 및 동 대행업
- 66) 기록매체 복제업
- 67)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소매업
- 68) 소프트웨어 자문, 개발 및 공급업
- 69) 환경정화제품 제조, 판매 및 동 대행업과 시공사업
- 70)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, 개조, 보수, 관리와 인테리어 관련 사업
- 71) 토목, 건축, 산업/환경설비, 조경공사업 및 동 대행업
- 72)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사업
- 73) 건설장비 및 물류장비 임대사업
- 74) 모터사이클, 운동기구, 각종 자전거 및 관련 부품 유통사업
- 75) 의료기구 수출 및 수입 유통사업
- 76) 해외 농장의 개발과 운영,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동 대행업
- 77) 임업, 산림사업, 산림서비스업 및 동 대행업

- 78) 산림의 개발과 운영, 산림자원의 생산, 가공, 판매 및 동 대행업
- 79) 바이오연료 생산, 가공, 유통, 수출입 및 동 대행업
- 80) 노인복지 및 요양시설 운영업
- 81) 의료관광 유치 및 시설 운영업
- 82) 폐기물 처리 및 부대시설 운영업
- 83) 수처리 및 부대시설 운영업
- 84) 교육 서비스 및 사설 강습시설 운영업
- 85) 택배 및 통신판매업
- 86)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
- 87)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·판매 및 설비·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
- 88)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와 판매업
- 89) 전기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
- 90) 친환경 소재 및 복합소재 제조·판매업
- 91) 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사업
- 92)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리사이클 사업 및 관련사업
- 93) 신기술사업회사 및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련사업
- 94) 산업, 물류용 등 로봇틱스 제조, 판매 및 관련 부품사업
- 95)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

제 3 조 (소재지)

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국내외의 각지에 공장, 지점,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4 조 (광고방법)

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hyundaicorp.co.kr>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.

제 2 장 주 식

제 5 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

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 천만 주로 한다.

제 6 조 (일주의 금액)

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금 5 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 만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

-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.
-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,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.

제 8 조의 2 (배당우선주식: 1 종 종류주식)

- ① 본 회사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(이하 "1 종 종류주식")을 발행할 수 있고,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 백만주로 한다.
- ②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% 이상의 배당률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.
-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 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.
- ④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⑤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.

- ⑥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 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
제 8 조의 3 (삭 제)

제 8 조의 4 (배당우선 전환주식: 2 종 종류주식)

- 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(이하 "2 종 종류주식")을 발행할 수 있고,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 백만주로 한다.
1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.
 2.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상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 3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.
 4. 2 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.
 - 가.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연평균 1.3 배 상회하는 경우
 - 나. 2 종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% 미만인 경우
 - 다. 특정인이 5% 이상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
 - 라.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
- ② 2 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 8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6 항을 준용한다.

제 8 조의 5 (배당우선 상환주식: 3 종 종류주식)

- ① 본 회사는 배당우선 상환주식(이하 "3 종 종류주식")을 발행할 수 있고,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 백만주로 한다.
- ② 3 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 8 조의 2 제 2 항부터 제 6 항을 준용한다.
- ③ 3 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.
1.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, 가산금액은 배당률, 시장상황,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 2.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 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.

- 가.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
- 나.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

3. 3 중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다만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 4.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 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3 중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("3-1 중 종류주식")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("3-2 중 종류주식")을 발행할 수 있고, 의결권 있는 3-1 중 종류주식의 1 주당 1 개로 한다.

제 9 조 (신주인수권)

-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 1.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2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3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
 4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(DR)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5.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6.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7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8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거래개발 또는 확대, 생산·판매·자본채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- ③ 제 2 항에 따라 주주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, 제 2 호, 제 2 호의 2,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9 조의 2 (주식매수선택권)

- ① 본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(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.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,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·직원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다만,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(상법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최대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
 - 2. 주요주주(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특수관계인
 - 3.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
-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(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)은 제 8 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시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.
-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, 임원 또는 직원의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.
 - 1.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
 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상법 제 340 조의 3 제 2 항 제 3 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
 - 나. 당해주식의 권면액
 - 2.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
-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

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
 - 2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
 - 3.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
 - 4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3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9 조의 3 (신주의 배당기산일)

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명의개서대리인)

-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
-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
-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
- ④ 제 3 항의 업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1 조 (삭 제)

제 12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

-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.

- 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3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주주총회

제 13 조 (총회의 소집, 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- ③ 주주총회에서는 사전에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. 단,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소집한다.
-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.
- ⑥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그 일시,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타 일개 일간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본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⑦ 본 회사가 제 6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·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·감사 후보자의 성명·약력·추천인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- ⑧ 본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상법 시행령 제 31 조 제 5 항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.
 1.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,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
 2.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

3. 사업개요, 경영현황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

제 14 조 (의 장)

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.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5 조 (의결권)

주주는 주식 1 주마다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16 조 (의 결)

- ① 총회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총회의 질서유지)

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의사록)

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.

제 4 장 이사,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

제 19 조 (이사의 선임)

-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
- ② 본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선임한다.
-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19 조의 2 (이사의 원수)

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. 단, 전체이사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임 기)

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,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.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
제 21 조 (해임과 결원)

-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 385조에 따른다.
- ②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 결원으로 간주한다.
 - 1. 이사회에 의하여 사임서가 수리되었을 시
 - 2.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
 - 3.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
 - 4. 사망 시

제 22 조 (이사의 보선)

-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 19조의 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23 조 (이사의 임무)

-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,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.
-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.

제 23 조의 2 (이사회의 구성과 권한)

-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,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,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② 권한의 위임,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 23 조의 3 (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,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 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, 정관 제 23 조의 11 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한다.
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23 조의 4 (대표이사)

이사회는 대표이사 1 명 이상을 선임하며,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.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지명이 없는 경우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3 조의 5 (이사회회장)

- ① 이사회회 의장은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제 23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이사회회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
-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선임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,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.
-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, 의장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 2 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3 조의 6 (이사회의 의안)

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. 단,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3 조의 7 (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)
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23 조의 8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,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 5.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
-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23 조의 9 (경영진의 선임과 급여)

- ① 본 회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.
-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3 조의 10 (고문 등)

- ① 대표이사는 최고 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최고 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23 조의 11 (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)

- ①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 비용, 기타의 손실,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.
- ② 본 회사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 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 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,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24 조 (삭 제)

제 24 조의 2 (감사위원회의 구성)

-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23 조의 8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0 제 2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
-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⑨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4 조의 3 (감사위원회의 직무)

-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제 2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-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.
- ⑦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.
-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

제 24 조의 4 (감사록)

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25 조 (사외이사의 자격)

사외이사는 경영, 경제,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,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제 26 조 (이사의 보수)

-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.

제 27 조 (삭 제)

제 5 장 계 산

제 28 조 (사업연도)

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29 조 (재무제표의 작성, 비치)

-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1. 대차대조표
 2. 손익계산서
 3.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
-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 1.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
 2.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
-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29 조의 2 (외부감사인의 선임)

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제 30 조 (이익금의 처분)

본 회사는 매사업연도이익금(이월이익잉여금 포함)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1. 이익준비금 현금배당액의 10 분의 1 이상
2. 기타의 법정적립금
3. 배당금
4. 임의적립금
5.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
6. 차기이월이익잉여금

제 31 조 (이익의 배당)

- ① 본 회사는 직전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
 1. 자본금의 액
 2.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 3.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
 4.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
- ②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.
- ③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단,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,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.
-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⑤ 제 3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.
- ⑥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6 장 사 채

제 32 조 (사채의 발행)

-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33 조 (전환사채의 발행)

-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- 2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거래개발 또는 확대, 생산·판매·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 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3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-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전환가액을 주식의 액면금액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.
-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「주식의 액면금액」까지로 할 수 있다.

제 34 조 (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

-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1.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
 - 2.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, 연구개발, 거래개발 또는 확대, 생산·판매·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 - 3.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

-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
-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,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「주식의 액면금액」까지로 할 수 있다.

제 35 조 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

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

부 칙 (1978. 12. 08)

1. (정관 개정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한다.

2. (세칙과 내규)

본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.

3. (규정의 사항)
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 (1996. 03. 02)

본 정관은 1996 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11 조, 제 16 조, 제 19 조 2)항, 제 23 조 7)항, 제 24 조, 제 25 조, 제 31 조, 제 32 조, 제 33 조의 개정 규정은 1996 년 10 월 1 일부터, 제 9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 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8. 03. 21)

1.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2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준용규정)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 (1999. 03. 27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 03. 25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1. 03. 28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 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동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 (2002. 03. 23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 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03. 22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7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 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07. 23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2003 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4. 03. 27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8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 03. 25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29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6. 03. 17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30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03. 06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3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03. 05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34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1. 03. 11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3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 03. 23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3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 조 내지 제 9 조, 제 23 조의 3, 제 23 조의 11, 제 29 조, 제 31 조, 제 32 조의 개정내용은 2012 년 4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03. 22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37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10. 02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2015 년 10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03. 22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43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8 조, 제 10 조, 제 12 조 제 1 항, 제 35 조 개정 내용은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 년 09 월 16 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03. 24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45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 03. 30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46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 03. 29)

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47 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